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3-1009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3.3.28)」에 따라,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책발표 이후 자녀를 출산(임신중이거나 대책발표 이후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한 가구에 대하여 자녀 수에 따라 자산요건을 완화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044-201-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